

일반공급(예비입주자 포함) 구비서류

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서류	○		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	본인	• 견본주택 비치 / 개인정보수집안내(신청자용)
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/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
	○		계약금 입금증	-	• 견본주택 현금 수납불가,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
	○		주택공급 신청서	본인	• 인터넷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외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 직접 신청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표기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• 발급기간 :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(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) ※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청약 불가
	○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배우자	•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	
가점제 당첨자 · 가점제 예비입주자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존속	•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 한 경우 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직계존속	• 피부양 직계존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
	○			자녀	• 만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만30세 이전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"상세"로 발급)
	○			자녀	•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"상세"로 발급)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피부양 직계존속	•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• 발급기간 : 기록대조일은피부양 직계존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
	○			피부양 직계비속	•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• 발급기간 : 기록대조일은피부양 직계존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※ 30세 미만 :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※ 30세 이상 :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
○		군복무기간(10년 이상)이 명시된 복무확인서, 청약 통장순위(가입)확인서	본인	•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 ※ 인터넷청약자는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제출 생략	
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당첨자	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발급용)
	○		위임장	당첨자	•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접수 장소에 비치
	○		대리인 신분증, 도장	대리인	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

※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-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 : 세대 구성사유,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, 현 세대원의 전입일 / 변동일 / 변동사유,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전체 포함),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-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 :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전체 포함),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(단,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)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
※ 2005.7.1. 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 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인터넷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(검증)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(초)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 존·비속 포함)으로 간주합니다.